

의안 번호	799
----------	-----

##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10. 11. 11(목)
- 제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0. 11. 17(수)
- 위원회심사 : 2010. 11. 22(월)

### 2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인용 법령, 내용 및 용어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,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, 내용정비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

### 4. 근거법규

-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, 제82조, 제83조, 제89조
- 「식품위생법」 시행령 제61조, 제62조
-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6조

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·관리하는 조례로서
-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
  -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용어의 정의, 기금의 조성 관련 상위 법령인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고,
  -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한 사업으로 하여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,
-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자구수정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 식품위생법

**제47조(위생등급)**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·가공업소,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18>

**제82조(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)** 제82조(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)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업자가 [제75조제1항](#) 각 호 또는 [제76조제1항](#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,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[제6조](#)를 위반하여 [제75조제1항](#)에 해당하는 경우와 [제4조](#), [제5조](#), [제7조](#), [제10조](#), [제13조](#), [제37조](#) 및 [제42조부터 제44조](#)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[제75조제1항](#) 또는 [제76조제1항](#)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0.1.18>
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납세자의 인적 사항
2. 사용 목적
3.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

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[제27조](#)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, [제75조제1항](#) 또는 [제76조제1항](#)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
1. [제25조제1항](#)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[제27조](#)에 따른 지정취소 등으로 식품위생검사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
2. [제37조제3항](#) 및 제4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[제75조제1항](#) 또는 [제76조제1항](#)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

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·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,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 과징금은 시·도의 식품진흥기금([제89조](#)에 따른 식품진흥기금)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귀속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 과징금은 시·도와 시·군·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. 이 경우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시·도지사는 [제91조](#)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.

**제83조(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)** 제83조(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[제4조부터 제6조](#)까지 또는 [제8조](#)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

4 (제135회-건설위제1차부록)

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.

1. [제4조](#)제2호·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[제75조](#)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,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
  2. [제5조](#), [제6조](#) 또는 [제8조](#)를 위반하여 [제75조](#)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[제37조제3항](#) 및 제4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- ④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,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[제82조제3항](#)·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

**제89조(식품진흥기금)**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식품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
2. [제82조](#), [제83조](#) 및 「[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](#)」 [제37조](#)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
3.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 <개정 2010.3.26>

1. 영업자(「[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](#)」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)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
2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 사업(소비자단체의 교육·홍보 지원을 포함한다)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·활동 지원
3. 식품위생과 「[국민영양관리법](#)」에 따른 영양관리(이하 "영양관리"라 한다)에 관한 조사·연구 사업
4. [제90조](#)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
5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
6.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
7. 집단급식소(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)의 급식시설 개수·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, 영양관리,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

④ 기금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·운영하되,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식품위생법 시행령

**제61조(기금사업)** ① [법 제89조제3항](#)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.

1.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·연구사업
2.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

3.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,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
  4.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
  5.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
  6. 식품산업진흥사업
  7. 시·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
  8.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
  9. [제18조제5항](#)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
  10. [법 제31조제2항](#)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
  11. [법 제47조제2항](#)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
  12. [법 제48조제11항](#)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
  13. [법 제63조제1항](#)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
  14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[제22조제6항](#)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
  15.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[제6조제2항](#)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
  16.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[제7조제3항](#)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·보수에 대한 용자사업
  17.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[제21조제4항](#)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[제62조제2항](#)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5>

**제62조(기금의 운용)**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.
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, 기금재무관,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
- 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,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##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

**제5조(영업의 허가 등)** ① [제4조제1항](#)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

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[제4조](#)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,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
**연혁** 제6조(영업의 신고 등)제6조(영업의 신고 등) ① [제4조제1항](#)제2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[제4조](#)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7>

②[제4조제1항](#)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[제4조](#)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약사법」 [제20조](#)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4.3.22, 2007.4.11, 2008.2.29, 2008.3.21, 2010.1.18>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,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3.21, 2010.1.18>
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